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70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 의 자 : 백선희 · 이해민 · 이학영

정춘생 · 황명선 · 황운하

박희승 · 손명수 · 정준호

조정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는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고 발표. ‘육아지원 3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 조정, 단축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음.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이 아닌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한편,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

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 해소(안 제70조의8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8(사무직원의 휴직)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소속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사무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0조의8(사무직원의 휴직) ①</u> <u>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u> <u>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u> <u>는 소속 사무직원이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u> <u>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사무직</u> <u>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u> <u>수 있다.</u> <u>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u> <u>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u> <u>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u> <u>사무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u> <u>게 된 경우</u> <u>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u> <u>(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u> <u>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u> <u>을 입양하는 경우</u> <u>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u> <u>유가 있는 경우</u> <u>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및</u> <u>제2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u> <u>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u> <u>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u>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
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
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는 정관으로 정한다.